

대한예수교장로회 혜성교회  
정관

목 차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교인

제 3 장 : 교회의 직원

제 4 장 : 교회의 기관

제 5 장 :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 6 장 : 보칙



대한예수교장로회

혜성교회

# 세부 목차

<p>1장 총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명칭)</li> <li>제2조(소속 및 소재지)</li> <li>제3조(목적)</li> <li>제4조(주권과 자유)</li> <li>제5조(사업)</li> <li>제6조(정관 등의 제정 및 적용)</li> <li>제7조(총회 헌법과의 관계)</li> </ul> <p>제2장 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절 통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교인의 정의)</li> <li>제9조(교인의 구분)</li> </ul> </li> <li>제2절 교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조(교인 자격의 취득)</li> <li>제11조(교인 자격의 정지와 상실)</li> </ul> </li> <li>제3절 교인의 의무와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교인의 의무)</li> <li>제13조(교인의 권리)</li> </ul> </li> </ul> <p>제3장 교회의 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절 통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4조(직원의 정의)</li> <li>제15조(직원의 구분)</li> </ul> </li> <li>제2절 교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6조(목사)</li> <li>제17조(담임목사의 지위)</li> <li>제18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li> <li>제19조(목사의 사임과 면직)</li> <li>제20조(원로목사와 은퇴목사)</li> <li>제21조(부목사)</li> <li>제22조(전도사)</li> </ul> </li> <li>제3절 장로·집사·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3조(장로의 선출과 직무)</li> <li>제24조(시무집사·시무권사의 선출과 직무)</li> </ul> </li> </ul> <p>제4장 교회의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절 통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5조(기관의 정의)</li> <li>제26조(회의법)</li> </ul> </li> <li>제2절 당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7조(당회의 구성과 운영)</li> <li>제28조(당회의 직무)</li> </ul> </li> <li>제3절 공동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9조(공동의회의 구성과 직무)</li> <li>제30조(공동의회 소집)</li> <li>제31조(공동의회 결의)</li> <li>제32조(공동의회 의사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절 제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3조(제직회의 구성과 운영)</li> <li>제34조(제직회의 직무)</li> </ul> </li> <li>제5절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5조(부속실)</li> <li>제36조(사무국)</li> </ul> </li> </ul> <p>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절 교회의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7조(교회재산의 정의와 구분)</li> <li>제38조(교회재산의 처분과 취득)</li> <li>제39조(교회재산의 관리와 보존)</li> <li>제40조(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li> <li>제41조(교회헌금의 예치)</li> <li>제42조(교회 부동산의 등기)</li> <li>제43조(탈퇴와 교회재산)</li> </ul> </li> <li>제2절 교회의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4조(재정운용의 원칙)</li> <li>제45조(수입)</li> <li>제46조(지출)</li> <li>제47조(예산)</li> <li>제48조(공시 및 열람)</li> <li>제49조(감사)</li> </ul> </li> <li>제3절 교회의 회계·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0조(회계연도)</li> <li>제51조(회계처리 방식)</li> <li>제52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li> <li>제53조(구분기장·회계)</li> <li>제54조(헌금의 관리)</li> <li>제55조(사례비, 보수)</li> <li>제56조(목회활동비의 성격)</li> <li>제57조(목회활동비의 사용목적)</li> <li>제58조(목회활동비의 보조)</li> <li>제59조(목회활동비의 수령 및 관리)</li> <li>제60조(목회활동비의 지출증빙)</li> <li>제61조(퇴직금)</li> <li>제62조(소득신고와 납부)</li> </ul> </li> </ul> <p>제6장 보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3조(정관 및 규정(규칙)의 개정)</li> <li>제64조(정관의 공시 등)</li> <li>제65조(교회해산 및 합병)</li> <li>제66조(교회분쟁해결)</li> <li>제67조(부칙)</li> <li>제68조(시행일)</li> </ul>
--	---

##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성경과 장로회의 정체와 그 원리를 근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혜성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어로는 “Hyesung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고, 한자로는 “惠城教會”라 한다.

### 제2조(소속 및 소재지)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이하 “총회”라 한다)에 속하고 총회 산하 “경기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에 속한다.
2. 본 교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6길 80(본관)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74 경신중고등학교 내(언더우드기념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신앙 교리, 신조, 행정 원리에 따라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주권과 자유)

1.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의 부르심을 입어 본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이 행사한다.
2.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3.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본 교회는 예배,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결정할 자유권이 있다.

### 제5조(사업)

1.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
2. 본 교회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는 당회 결의로, 예산은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한다.

### 제6조(정관 등의 제정 및 적용)

1. 정관은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공동의회에서 제정된다.

2. 정관 이외에도 공동의회 결의로 필요한 규정(규칙)을 둘 수 있다.
3.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 당회 결의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4. 정관은 규정(규칙)에 우선하며, 규정(규칙)은 시행세칙에 우선한다.
5. 정관·규정(규칙)·시행세칙은 제정 이후 본 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인에게 적용된다.

#### **제7조(총회 헌법과의 관계)**

1. 정관과 규정(규칙), 시행세칙은 총회 헌법과 규례에 의한다.
2. 정관과 규정(규칙), 시행세칙은 본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 헌법과 규례에 구속된다.

## 제2장 교인

### 제1절 통칙

**제8조(교인의 정의)** 본 교회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재적을 둔 자이다.

**제9조(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본 교회에 등록하여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학습 받기 전의 교인
2. 학습교인 : 만 14세 이상의 원입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교회가 시행하는 복음기초과정을 수료하고 구원 간증문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학습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영유아 (유아 세례는 부모 중 한쪽만 세례교인이면 가능)
4.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여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당회의 문답을 거친 후 세례를 받은 교인
5. 입교인 : 유아 세례를 받은 후 만 14세 이상이 되어 본인이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당회의 입교 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교인

### 제2절 교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 제10조(교인 자격의 취득)

1. 본 교회의 교인 자격은 본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신청을 한 후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등록과정)을 거치고 등록이 확정되어 교적부(교인명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된다.
2. 교인은 교적부 상의 자격 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교인 자격의 정지와 상실)

1.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자연적으로 교인 자격이 정지된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담당 교역자에게 사전 동향보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② 기타 교인의 의무를 상당 기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③ 제명·출교 이외의 책벌을 받아 근신 중인 때
  - ④ 타교회에 등록된 것이 확인된 때
  - ⑤ 사망한 때
2.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당회 결의로 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인이 교회 탈퇴 의사를 담당 교역자나 당회원에게 통지한 때
  - ② 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은 때
  - ③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④ 교인 자격이 정지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한 때
3. 교인 자격이 정지되면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교인 자격 상실과 동시에 교인의 권리도 상실된다.
4. 교인 자격의 정지와 상실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회 결의로 교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5. 당회는 교인 자격의 정지·상실·회복이 발생한 때에는 교적부에 곧바로 이를 기재해야 한다.

### 제3절 교인의 의무와 권리

**제12조(교인의 의무)**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총회 헌법적 규칙 제2조)

1.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집회에 성실한 참여
2. 헌금·전도·봉사·구제
3. 교회 치리에 복종

**제13조(교인의 권리)**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세례교인(입교인)의 성찬 참례권
2.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
3. 정관에 따른 세례교인(입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정관에 따른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
5. 정관과 총회 헌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6. 정관과 총회 헌법에 따른 문서로 청원할 권리

## 제3장 교회의 직원

### 제1절 통칙

제14조(직원의 정의) 교회의 직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긴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를 말하며 교회의 유급직원(간사, 기사 포함)과 구분된다.

### 제15조(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할 항존(恒存)직과 필요에 따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임시직이 있다.
2. 항존직은 장로·집사·권사이다.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3. 항존직의 시무 정년은 총회 헌법을 따른다.
4.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 집사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목사와 전도사는 그 직분 특성에 따라 교역자라 부른다.

### 제2절 교역자

#### 제16조(목사)

1. 자격 :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총회가 정한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총회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과정을 거쳐 노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은 자이다.
2. 직무 :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3. 소속 : 목사는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위임을 받아 본 교회에서 시무하되, 노회에 속한다.
4. 명칭 : 목사의 명칭은 위임목사, 담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임시목사, 협동목사 등으로 구분한다.

#### 제17조(담임목사의 지위)

1.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 받아 총회가 정한 정년까지 시무하는 목사이다.
2. 담임목사는 다음의 지위와 권한이 있다.
  - ① 본 교회의 대표
  - ② 설교·인사·재정 및 교회 모든 직무와 사역의 총괄·지도·감독
  - ③ 당회·공동의회·제직회 당연직 의장

**제18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 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 정관 제16조가 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2. 후보자추천: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3. 청빙결의: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을 결의한다.
4. 청빙청원: 청빙 결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의회 출석 교인의 과반수가 서명한 명단을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한다.
5. 위임예식: 담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총회 헌법에 준하여 노회의 주관으로 진행한다.

**제19조(목사의 사임과 면직)**

1. 목사의 사임은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2. 목사의 사임에는 자의(自意) 사임과 권고(勸告) 사임이 있다.
  - ① 자의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시무 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 결의와 노회 허락을 받아 사임하게 할 수 있다.
  - ② 권고 사임: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 특별결의로써 시무 사임을 노회에 건의할 수 있다.
3. 목사는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권징 재판에 의해 면직·제명·출교의 처벌을 받은 때에는 본 교회의 목사직에서 면직된다.

**제20조(원로목사와 은퇴목사)**

1.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는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2. 원로목사 추대는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로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본 교회에서 20년 미만 시무하고 은퇴하는 위임목사는 은퇴목사가 된다.
4. 원로목사와 은퇴목사의 예우는 당회 결의로 정한다.



### 제21조(부목사)

1. 부목사는 총회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 임직을 받은 총회 소속 목사로 한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설교·교육·심방·성례식 등의 활동을 한다.
3.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부목사의 청빙과 연임은 당회 결의로 한다.
4. 교회의 특별한 사역의 목적과 역할을 위하여 타교단 소속 목사를 당회 결의로 부목사 혹은 협동목사로 둘 수 있다.

### 제22조(전도사)

1. 전도사는 총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예비목회자 혹은 총신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 결의로 청빙하며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2. 전도사는 직임 별로 다음과 같이 시무하게 할 수 있다.
  - ① 전임 전도사: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전도사를 말한다.
  - ② 교육 전도사: 목회 전임 전에 담임목사의 지도로 목회를 배우며, 교회기관에서 수련하는 전도사를 말한다.
3. 강도사는 전도사에 준한다.

## 제3절 장로·집사·권사

### 제23조(장로의 선출과 직무)

1. 장로 후보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합한 자로, 만 40세 이상이며, 시무집사로 5년 이상(투표일 기준) 무흠하게 섬겼던 자이어야 한다.
2. 장로는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결의로 선출한다. 장로 후보 추천과 선출에 대한 내용은 당회 결의로 정한다.
3. 장로로 피택된 자는 당회가 정한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노회의 장로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 제24조(시무집사·시무권사의 선출과 직무)

1. 시무집사·시무권사 후보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합한 자로, 시무집사는 만 35세 이상, 시무권사는 만 45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시무집사·시무권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결의로 선출한다. 집사·권사 후보 추

천과 선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회 결의로 정한다.

3. 시무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제직회원이 된다.
4. 시무권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심방하며 권면하는 일을 담당하며, 제직회원이 된다.

## 제4장 교회의 기관

### 제1절 통칙

**제25조(기관의 정의)** 본 교회의 기관으로서 당회·공동의회·제직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회: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신앙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다.
2. 공동의회: 본 교회 최고의결기관이다.
3. 제직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교회의 재정 수납 지출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26조(회의법)** 교회 각 기관의 회의는 만국통상회의법 및 교회의 통상적 회의 관례에 따라 행한다.

### 제2절 당회

#### 제27조(당회의 구성과 운영)

1.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연직 당회장이 된다. 다만 담임목사의 사임 등으로 당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본 교회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해야 하며, 일시적인 유고(업무상 출타, 안식년, 병가 등)의 경우에는 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당회 서기가 당회 임시의장으로서 중대한 사안의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가 있다. 정기당회는 1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무장로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노회, 총회)가 회집을 명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시(대리)당회장이 소집한다.
3. 당회장은 당회 1주간 전에 시간과 장소를 후보와 예배 광고를 통해 공고한다.
4. 당회는 당회장과 시무장로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시무장로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당회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성도들의 당회 의사록 열람청원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가 허락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당회의 직무)** 당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교인의 신앙 행위 총찰: 교회 정기 예배 주관,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 성찬 예식의 주관, 교인 자격의 취득 확인 및 교인 자격의 정지·상실·회복 결정, 교적부(교인명부)의 관리
2. 교회직원 인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선정과 공동의회 상정, 담임목사의 해임권고안 공동의회 상정, 부목사 및 전도사의 청빙, 장로·집사·권사의 후보자의 추천, 교육 및 임직 주관, 사무직원의 임면
3. 교회행정 총괄·감독: 공동의회 소집, 예산결산안의 제출,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소속기관과 단체 및 부설기관 감독 지도, 교회 일반재산의 취득과 처분, 교회재산의 관리와 보존,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노회의 총대 장로 파송과 상황보고 및 청원, 노회 임시(대리)당회장 파견요청, 교회명义的 소송제기 및 응소, 교회해산과 잔여재산 귀속 공동의회 발의,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공동의회 발의, 규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공동의회 발의
4. 권징: 교회의 권징 재판에 관한 규칙과 총회 헌법 권징 조례에 따른 교인의 권징

### 제3절 공동의회

#### 제29조(공동의회의 구성과 직무)

1. 공동의회는 제11조 1항과 2항에 따른 교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입교인) 중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를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당회의 제시사항, 제직회의 청원사항, 상회(노회,총회)의 요구사항,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사항
  - ②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 연도 예산안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 ③ 담임목사 청빙·권고사임
  - ④ 장로·집사·권사 선거
  - ⑤ 교회 주요재산(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재산)의 유상취득·증여·매매·교환·변경·처분·담보제공
  - ⑥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의 폐지·분리·합병
  - ⑦ 정관과 규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는 교회의 제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의회 결의로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0조(공동의회 소집)

1.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월 중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 ①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 ④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본 정관 제27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대리)당회장이 소집한다.
4. 당회장은 공동의회 1주간 전에 그 회의 안건, 시간, 장소를 후보와 예비광고를 통해 공고한다.
5. 당회장은 공동의회 1주간 전에 공동의회 공고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교회 홈페이지 또는 벽보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 제31조(공동의회 결의)

1.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개회 성수는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회집된 출석수로 한다.
3. 공동의회 일반 결의는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4. 본 정관 제29조 1항 ③호와 ⑥호의 결의("특별결의"라 한다)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교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 제32조(공동의회 의사록)

1. 공동의회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당회록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議事)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한다.
3. 의사록 열람청원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가 허락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 제4절 제직회

### 제33조(제직회의 구성과 운영)

1. 제직회는 담임목사, 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연직 회장이

된다. 다만 당회 결의로 서리집사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직회는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교회 제직회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직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정관 제2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대리)당회장이 소집한다. 당회장이 일시적인 유고(업무상 출타, 안식년, 병가 등)의 경우에는 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당회 서기가 제직회 임시의장으로서 중대한 사안의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3. 제직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공고하며, 회집된 출석수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4.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제직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5. 제직회 의사록의 열람청원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가 허락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34조(제직회의 직무)** 제직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구제와 봉사에 관한 업무
3.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재정에 관한 특별안건
4. 제직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사항

## 제5절 기타부서

**제35조(목회행정실)**

1. 담임목사의 목회를 지원하기 위해 목회행정실(명칭은 자유)을 둘 수 있다.
2. 목회행정실은 담임목사의 설교준비, 심방, 상담, 내방객 접대, 일정관리, 종교활동비 관리 등을 주관한다.

**제36조(사무국)**

1. 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재정, 인사, 건물관리 등의 사무를 집행한다.
3. 사무국의 직제, 운영, 임면, 보수, 정년에 관한 사항은 당회 결의로 정한다.
4.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총회헌법이 금지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 제1절 교회의 재산

#### 제37조(교회재산의 정의와 구분)

1. 교회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및 금전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2.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며 지분권은 없다.

#### 제38조(교회재산의 처분과 취득)

1. 제29조 1항-⑤호를 제외한 교회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당회는 전항의 결과를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교회재산의 관리와 보존)

1.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2. 교회재산을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 제40조(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

1. 교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지분권은 없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교회시설의 사용·수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 등 본 교회 고유목적 이외의 교회시설 사용은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시설 사용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교회에 그 책임이 없다. 또한,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시설 사용자가 교회에 입힌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 제41조(교회헌금의 예치)

1.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은 교회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채권은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예치한 교회 예금 기타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명의로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 제42조(교회 부동산의 등기)

1.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2.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3.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으로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은 교회에 배상 책임이 있다.

#### 제43조(탈퇴와 교회재산)

1. 본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이탈한 자와 정관 제11조에 의거 교인의 자격정지와 상실된 자는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권)를 정지하고 상실한다.
2.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2절 교회의 재정

#### 제44조(재정운용의 원칙)

1. 교회재정은 청지기적 사명을 바탕으로 균형성·투명성·건전성 등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교회의 재정관리는 당회 결의로 임명되는 재정담당 부서장이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3. 재정담당 부서는 재정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 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대출,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교회의 재정업무와 운용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무회계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제45조(수입)

1.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2.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후원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3.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제46조(지출)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제직회의 허락을 받아 예비비에서 집행하되 당회 결의로 집행 이후 제직회에 추인 받을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예산 집행 및 결산을 책임지며, 항목별 세부예산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3. 각 위원회별 재정의 집행은 결산하여 정기제직회에 보고한다.

#### 제47조(예산)

1.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추가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제48조(공시 및 열람)

1.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된 예결산 안의 열람청원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가 허락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2. 교회의 재정 운용에 부정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교인들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교회의 재정장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교회는 전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교회재정장부 열람·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

1. 당회는 감사 선임 시 재정(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종직자(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로 하되 책임자가 없을 경우 서리 집사)를 감사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2.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4.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회계기관에 재정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교회의 회계·세무

제50조(회계연도) 본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2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1.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 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53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교회경상비와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경상비 중 목회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 처리를 한다.

#### 제54조(현금의 관리)

1. 교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현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2. 교회 명의의 통장은 교회운영(경상)비 통장,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활동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3. 교회 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5조(사례비, 보수)

1.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3. 교역자와 사무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4. 교회는 교역자와 사무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당회 결의 혹은 '교직원 복지비 지급 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목회활동비의 성격) 목회활동비는 목회 유익과 교회발전 및 교회를 대표하기 위한 교

역자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제57조의 목회활동비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교역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57조(목회활동비의 사용목적)

1. 목회활동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2. 목회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 ① 교역자의 목회연구 및 사역에 필요한 자료 구입 및 연구활동과 기타 필요한 제 비용의 지출
  - ②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교역자·기독교계 인사·교인에 대한 목회 차원에서의 지원
  - ③ 교회를 방문한 외부 교역자·교인·기타 내방객에 대한 식대, 선물 등 접대
  - ④ 목회와 관련된 인사의 애경사 지출
  - ⑤ 교역자의 목회활동 및 대외활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역을 위한 지출

#### 제58조(목회활동비의 보조)

1. 목회활동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2. 목회활동비가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9조(목회활동비의 수령 및 관리)

1. 목회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목회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목회활동비 통장'으로 입금하여 목회행정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

#### 제60조(목회활동비의 지출증빙)

1. 목회활동비가 공동의회에서 총액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 시마다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활동비 통장의 계좌이체, 활동비 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한 증빙을 권장한다.
2. 목회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지출은 목회행정실에서 지출처를 확인하거나 지출 결의서를 기록·관리한다.

#### 제61조(퇴직금)

1.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사무직원에게 대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담임목사

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부교역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본인과 교회가 납입의 절반씩 부담한다.
3. 담임목사의 국민연금은 본인과 교회가 납입의 절반씩 부담하고, 담임목사의 퇴직연금은 총회와 노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금액의 연금을 담임목사 부임시점부터 교회가 준비한다.

#### **제62조(소득신고와 납부)**

1. 교역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교역자가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역자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에 있어서 월별신고납부와 반기별신고납부 중 월별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교역자는 소득세액의 확정 여부에 있어서 연말정산방법과 소득세확정신고방법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장 보칙

### 제63조(정관 및 규정(규칙)의 개정)

1. 정관의 개정은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규정(규칙)의 개정은 당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64조(정관의 공시 등)

1. 정관은 당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교인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공시는 결의일 기준으로 일 주간 전에 교회 건물 내 벽보 또는 열람대 비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3. 제정 및 개정된 정관은 교회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공시한다.
4. 정관의 간서인은 담임목사와 공동의회 서기로 한다.

### 제65조(교회해산 및 합병)

1. 교회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은 당회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의결한다. 교회를 해산하고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같다.
2. 교회 해산과 합병 결의는 본 교회 소속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
3. 제1항의 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본 교회 소속 노회의 유지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6조(교회분쟁해결)

1. 교인의 권징에 관한 분쟁은 총회 헌법의 권징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권징 및 정관 적용에 관한 교회분쟁은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부칙)** 본 정관에 미비 된 것은 성경과 총회 헌법과 규례에 따르며 헌법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회 결의에 따른다.

**제68조(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가 결의한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정 1995년 11월 26일

개정 2025년 3월 9일

